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화벌이 실태

2023년 5월 1일

김동수(Ph.D)

(전 와세다대학 초빙교수, 전 북한외교관)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화벌이 실태

1. 북한 외화벌이의 역사적 개관

1) 개관

1970년대 초 김일성은 ‘군중외화벌이’를 발기하고 지방무역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에 무역부(현재 대외경제성) 지방무역지도국, 각 도·시·군에 도 무역국, 시·군 무역부, 시·군 외화벌이사업소를 설립함으로써 나름 지방주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정연한 외화벌이시스템을 갖추었다. 후일 이것은 북한외화벌이의 원조로써 당·군·정 외화벌이의 모델로 되었으며 각급 기관들의 외화벌이의 주요 형태로 활용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세운 외화벌이시스템을 지방무역체계라고 명명하는 바,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수공업품을 수출하여 지방주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영농물자들을 수입보장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후일 외화벌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온갖 비리를 산생시키고 북한사회에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기본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무역성 지방무역지도국은 지방무역시스템의 중심이면서도 외화벌이의 원조로써 1970년대를 대표하는 외화벌이 기관으로 맹활약하였으나 이후 지방무역지도국의 무역활동 기법을 배운 호위사령부, 국가보위부, 보안성 등에 의해 그 수법이 확산되면서 그 기능도 서서히 감소되었다.

북한에서 “충성의 외화벌이”는 1970년대 중후반 김정일이 당을 장악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정일이 1970년대 중후반 당사업을 하나하나 장악하면서 외화벌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 내에 39호실¹⁾을 내오고 금·은·동 등 유가금속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외화벌이를 추진하였다. 당 39호실 산하에 각도·시·군 당 조직들에 5호관리소를 내오고 운영하였는데 이것은 김일성의 지방무역체계를 그대로 당내에 옮긴 복사판이었다. 김정일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당 38호실²⁾을 내오고 호텔, 외화상점, 외화식당 등을 통한 외화벌이를 전개하였으며 당 내에서는 당 39호실과 당 38호실 간 “경쟁”을 붙였다.

한편, 김정일은 당·군·정 각 기관들에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를 하달하고 그 집행형상을 당적으로 총화하면서 이 사업을 독려하였다.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는 김정일의 생일을 기점으로 상납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충성의 외화벌이” 금액은 대체로 김정일의 탄생일인 2월16일을 상징하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1) ※ 39호실은 생산 중심의 외화벌이라는 특징

2) ※ 38호실은 서비스 중심의 외화벌이라는 특징

대체로 216만 달러를 목표로 하였다.

1980년대 전당적·전 사회적으로 “충성의 외화벌이운동” 추진하였다. 1980년대 김정일은 당에 대한 장악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전당적·전 사회적으로 “충성의 외화벌이운동”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관·기업소들에 외화벌이기지를 꾸리도록 당 조직적으로 지시들을 하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당조직적으로 모든 기관·기업소들에 “충성의 외화벌이”과제 하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강하게 총화 하였다. 또한 이 운동에서 우수한 단위들을 평가하고 우수분자들을 표창하여 “충성의 외화벌이운동”을 당적으로 적극 독려하였다.

1980년대 외화벌이가 활발히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외화상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곧 이어서 외화식당 등 외화봉사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당 내 충성의 외화벌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초기 외화봉사망들은 대다수 당 내 외화벌이 기관들이 독점적으로 내왔고 이에 군·공안기관들이 뒤를 이어 외화상점과 외화식당들을 내오기 시작하였다. 외화봉사망들이 대거 등장하고 사람들 속에서 외화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면서 북한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2014년 당39호실과 38호실이 하나로 통합되어 39호실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 외화벌이에서는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김정은은 종전의 당 39호실과 당38호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당39호실로 만들고 당 외화벌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하여 당 39호실은 금·은·동 등 유가금속들과 송이버섯 등 값비싼 농토수산물들을 생산 수출하는 것과 함께 외화식당, 외화상점, 호텔 등 모든 외화봉사기관을 총괄하는 유일적 당 내 외화벌이 기관으로 부상하였다.

2) 북한 무역 및 외화벌이 조직체계

당에서는 당 39호실에서 자체 무역회사들과 외화서비스업종으로 외화벌이를 추진하는 한편, 전 당적·전 국가적 외화벌이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군에서는 인민무력부 623관리국이 군 내 무역회사들을 총괄하면서 “강성무역회사” 등 각 무역회사들의 수출입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내각에서는 대외경제성이 내각 산하 무역회사들을 총괄하면서 무역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대외경제성 자체 무역회사들도 운영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도 당 군수공업부 지도하에 무기생산 및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바, 제2경제위원회 대외경제총국이 수출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 군수공업부는 산하에 조선광업개발총회사(대외명칭 창과무역회사)와 창광신용은행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무기 수출과 자재보장 등 군수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 군수공업부 산하 창광무역회사와 제2경제위원회 대외경제총국의 업무상 구별되는 점은 창광무역회사는 미사일을 비롯한 탄두수출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제2경제위원회는 총탄, 자동보총, 박격포 등 기존무기들의 수출을 기본으로 업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들도 각각 산하무역회사들을 운영하고 있

다. 호위사령부는 연못무역회사, 국가안전보위성은 신흥무역회사, 인민보안성은 룡산 무역회사와 그 산하 외화별이사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내각 산하 각 위원회·성·지도국들도 소속 무역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바, 그 수는 400여개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 국가관광총국은 국가관광사, 청년동맹은 828무역회사와 청년관광회사, 대외건설 지도국은 장산건설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화별이 실태

1) 시기별 외화별이 양상 및 실태

북한 외화별이의 원조, 지방무역체계는 1970년대 김일성에 의해 무역성(현재 대외경제성)에 지방무역지도국이 창설되었고 지금은 각 도·시·군에 하부 조직으로써 도에는 무역관리국, 시·군들에는 무역부와 시·군 외화별이사업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각 도에는 도 인민위원회 무역관리국이 도 내 무역 및 외화별이를 총괄하고 있는데, 무역성 지방무역관리국의 지도를 받는다. 시에는 시 인민위원회 무역부가 시의 무역 및 외화별이 총괄하고 시 외화별이사업소들을 지도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 인민위원회 무역부가 군 내 무역 및 외화별이 총괄하고 군 외화별이사업소를 지도한다.

지방무역기관들은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다. 초기 지방무역기관들은 건고사리, 줄당콩, 참깨잎, 산나물절임, 건고구마줄기, 건도토리, 잣씨, 해바라기씨, 각종 조개류(어패류), 해삼, 광어, 은단, 명란, 실뱀장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수출대상국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랍 나라들 특히, 일본에로의 수출이 다수를 이루었다.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방무역기관들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무역회사들은 북한의 농수산품들을 수입하여 한국으로 되팔아 술한 돈을 벌었으며 그나마 품질타락을 하면서 제멋대로 북한의 농수산품 가격을 내리었다.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서 지방무역기관들은 민족경제위원회를 통해 농토산품들을 남한으로 수출도 하였다.

중계무역 활용으로서 1990년대 초 일본-북한-중국을 연결하는 중고승용차거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2년에는 중고승용차거래가 한해 순 이득금으로 5,000만 달러 돌파하였다. 또한 농토산품 중계무역도 다소 진행되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업자들은 중국산 농토산품을 북한에 반입하였다가 북한산 원산지를 붙여 그것을 한국으로 다시 되팔아 이득을 취하였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중반 시기 중국에서 광물수요가 급증하면서 북·중무역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금속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광물들을 요구하였는데 그 많은 몫을 북한에서 광물을 수입하여 충당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 중국 상인들의 수요에 따라 연·아연·몰리브덴·중석정광들과 감람석 등 보석류 수출하였다.

이러한 광물 수출은 새로운 광산개발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중국측 투자에 의한 광산개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거의 모든 중앙 급 무역회사들과 지방무역기관들은 중국의 투자를 받아 광산을 개발하였으며 생산한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중국 상인들은 광산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들에 값을 덧붙여 납입하고 그것을 광물로 상환 받아 폭리를 취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사금생산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사금생산방법들이 창안·도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황해남북도 일대 갈철광이 개발되어 수출되었다. 석탄은 초기 톤당 30달러가 되나마나하였으나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올라 톤당 90여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석탄수출을 더욱 추동하였다. 석탄은 내각 석탄공업성 산하 석탄무역회사, 인민무력부 54부에만 수출 와크를 제한하고 이 무역회사들만 수출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2006년 갈철광수출을 위해 각 무역회사들이 뛰어들고 서로 경쟁적으로 매장지를 타고 앉으면서 마찰도 발생하였다. 중국 길림성의 서양 집단공사도 북한 황해남도 옹진 지구 갈철광 매장지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후일 북한 측의 일방적 요구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으며 이는 훗날 장성택이 마지막으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원자바오총리를 만났을 때 거론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수출품 생산 공장·기업소들은 다른 공장·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수출품 공장·기업소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원료·자재·전기, 기능공 문제들이다. 원료·자재는 외화로 사오거나 해외에서 무역회사가 먼저 들여다 주기 전에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애자와 같이 국산원료·자재에 90%이상을 의존하는 수출품생산 공장들은 별문제이지만 공작기계(선반)과 같이 철판과 전동기를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품생산 공장·기업소들은 무역회사나 해외주문자가 선투자조건으로 철판과 전동기를 넣어주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공장·기업소들의 전기 공급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의 수출품 공장·기업소들은 일반 지방산업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전기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생산에 심한 지장을 받고 있다.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납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태이다. 북한의 공업제품 수출은 거의 모두가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이 대체로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있다.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능공들이 공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품의 질과 납기문제를 산생시키고 있다. 수출 공장·기업소들이 수출품을 수출한 대금을 공장·기업소 지배인 결심으로 이용할 수 없어 수출을 진행하고도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기능공들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기업소들은 오랜 기능공들의 부족으로 품질, 납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북한의 수출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수출품의 기술혁신,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아프리카와 같은 덜 발전된 나라

들에 수출이 국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반 공작기계, 애자 등 수출품의 80~90% 이상이 30~40년 전 설계와 기술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실태이다. 설계와 기술이 개선되지 못하고 낙후한 것으로 해서 시장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나라들에 국한되고 상품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새로운 수출판로, 발전된 유럽 나라들에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상품의 질 문제로 해서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조치로 수출 공장·기업소들과 무역회사들에 혼란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초에 취한 당국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수출품 공장·기업소들에 판매 권한이 부여되고 새 조치 이행과정에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종전에는 담당무역회사를 통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시스템이었고 따라서 애로는 있지만 생산원료·자재를 담당무역회사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생산된 수출품을 담당무역회사가 수출하는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었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공장·기업소 지배인의 결심에 의해 거래대상이 결정되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이미 전에 계약하고 원료·자재를 납입한 구매자에게 수출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배인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구매자에게 수출품이 제공됨으로서 종전구매자 - 담당무역회사 - 수출 공장·기업소 사이에 채권·채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조치는 북한의 공업제품 수출에 일정 기간 혼란을 조성하고 원료·자재공급과 납기보장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종전의 수출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무역회사들이 새로운 조치에 의해 수출입거래에서 배제됨으로서 공장·기업소 주도의 수출입거래 상황이 조성되고 종전의 담당무역회사들과 수출 공장·기업소들 사이 마찰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해서 수출입거래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구매자, 판매자간 신용이 허물어지며 수출품의 규격, 생산, 포장, 납기 등 무역 실무적 문제들에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당국은 공장·기업소들에 생산권, 가격결정권, 계약권, 무역권을 주는 것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이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이름을 붙여 공장·기업소들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부여를 주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식료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들이 일부 추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료품들의 질과 가치 수가 다양해지고 상품포장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산품을 모방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무역일꾼들과 해외출장자들은 중국 등 해외출장 시 설비와 원료들 수입하여 국내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식료품들과 경공업품들을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상품들은 수입상품들 보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더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근로자 파견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근로자파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벌목 노동자에서 건설노동자로 전환

하였다. 중국의 식당봉사업종에서 피복·건설·운수·광업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파견인원수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에 기술협조대표단, 의료단, 건설 및 조각대표단들 파견하였다.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쿠웨이트에 파견한 근로자 수가 3000명에서 4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 수가 수백에서 수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러시아에 파견한 근로자 수도 수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파견나라와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날 중동국가들에는 리비아, 쿠웨이트 정도라면 지금은 바레인, UAE 등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에서는 동북지방에 집중되었던 근로자파견이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원동지방에서 쌍크트베제르부르그 등 서쪽 지역으로 파견근로자들의 파견지가 확대되고 있다.

2) 업종별 외화벌이 실태

농수산물 수출로는 중국산 농토산물 수출증가로 북한산 농토산물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교역 중단으로 농수산물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에 많이 수출되던 광어, 은단, 명란 등 수산물이 북-일 국교중단으로 수출중단 상태이다. 일부 수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이나 중국 상인들의 품질트집으로 가격이 좋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 내 전반적 지방무역기관들의 장비와 설비부족과 노후화로 수출품 보관과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기지들에 대한 해외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출품생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품질보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류수출로는 의류수출 가공공장들의 설비·전기 공급 상황이 좋지 못하여 생산에 심한 지장을 받고 있다. 북-일 관계 악화로 새로운 설비들이 보강되지 못하고 있고 가공기술도 후퇴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의류가공주문이 중단되어 기존 가공공장들이 서서히 가동을 멈추고 있다. 서유럽 나라들도 의류가공주문을 줄이는 상황이어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의류와 스웨터 등 의류가공주문이 중국 상인들의 농간으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광물수출로는 채굴·채광 조건이 불비하여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가격마찰로 수출대금에서 많은 손실 초래하고 있다. 중국 측이 투자한 몫에 대한 현물상환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 측이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

전기·식량·수송 등으로 생산과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대다수 광산들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 수작업으로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발동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유소비가 많다.

최근 유엔안보리대북제재로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엔안보리결의 제 2371, 제2375로 인해 주요 광물들인 석탄·철광석·연·아연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석탄수출은 채굴 갱의 침수로 생산에 극심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

출이 중단되고 석탄생산이 중지되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설비·수송 문제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설비 부족으로 인해전술에 매어달리고 있으며 탄광들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석탄가격하락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유엔안보리결정 제2371호로 수출이 완전 금지되어 밀수출에 의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은 국내 관광호텔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비가 낙후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 존재하고 있다. 관광시설의 부족과 낙후로 인해 관광객들을 내륙 깊이 유치하지 못하고 국경연선 관광을 주로 진행하면서 관광수입을 증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 지방정부들과 공동으로 관광지구들을 개발하려고 하나, 현 국제정세로 관광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근로자파견은 해외파견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이 전반적으로 낮아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다. 뇌물인사가 만연하여 기능공들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해외에 파견되어 작업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열악한 노동 및 숙박조건으로 파견근로자들 속에서 환자들 속출하고 있다. 컨테이너 속 0.6평 정도의 공간에서 50도씨 정도의 고열을 견디면서 생활해야하는 상황이고 의료보험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들의 일반지식부족과 법 준수정신부족으로 주재국에서 여러 가지 범법 현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 추방 등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상황의 악화로 노동력을 제때에 교체하지 못하거나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수적인 인사 및 파견체제로 신속하게 해외로 근로자들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3) 북한의 광산개발 및 운영 메커니즘

광산개발대상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무역회사는 지방의 기관·기업소·개별적 인물들과 연계하면서 광산개발대상을 선정한다. 무역회사들은 지방에서 활동하는 지방 지질탐사대, 지방 기관 및 공장들, 지방의 관계 인물들과 접촉과정에 광물매장지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 그에 기초하여 개발대상지를 선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방 관리들은 자기 지방에 연(납)·아연 등 광물들이 대거 매장되었다고 하면서 공동으로 광산을 개발할 것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지방 관리들로는 지방의 당 및 행정일꾼들로 당국이 부여하는 비료·인민생활 향상과제 수행자금이 곤란한 지역들이 대다수이다. 지방 관리들은 중앙의 무역회사들이 '투자'를 해 줄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 하에 자기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광물이 나오면 공동 광산개발을 중앙의 무역회사들에 제기한다.

시·군 당 책임비서, 조직비서들과 행정위원장들은 본인이 직접 이러한 안을 가지고 올라와서 무역회사들에 제기하거나 관할 시·군 외화별이사업소지배인을 통해 제기한다. 시·군 외화별이사업소지배인들도 당국이 하달하는 각종 외화별이과제를 수행할 테마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지방의 광물매장지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다.

중앙의 무역회사들은 제기된 안건이 신빙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여 현지에 내려가면 지방 당 및 행정·경제 간부들이 직접 안내하거나 광산개발 관련 안건 토의에 참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광산개발안이 점점 현실성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마침내 광산개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는 중국 무역회사가 다른 무역거래를 토의하는 과정에 “XX지방 XX에 당신네 회사가 광산을 개발하면 우리 중국회사가 투자하겠다.”면서 광산개발지점과 투자의향을 선제적으로 밝히기도 한다. 중국 측 무역회사는 북한과의 무역거래과정과 동료 중국인들을 통해 취합한 광물매장지에 대한 정보를 북한 측에 설명하면서 광산개발과 광물거래를 합작 할 데 대한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제기된다.

광물거래가 2000년대 초부터 북·중 무역에서 가장 핫한 거래테마로 등장하면서 중국 측 무역회사들은 광산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북한 측에 밀붙는 상황이다.

중국 측 무역회사들은 선투자의향을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우리 두 회사가 공동으로 광산을 개발하고 광물거래를 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북한 측을 부추긴다. 중국 선양에 위치한 중국 500대기업 중 하나인 서양 집단공사는 북한의 철광석광산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바 있다. 중국 서양 집단공사는 2007년 북한 조선령봉무역총회사에 철광산개발을 제의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수천만 미 달러를 투자하였다. 후일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철수지시’로 중국 서양 집단공사는 이미 북한에 투자한 수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는 장성택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더 많은 중국의 투자를 요청하는 장성택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키었다. 그러면서 북·중 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이 투자보호법을 완성해야 중국이 더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 이후 장성택은 북한에 돌아가 투자보호법 정비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국투자보호법을 보다 정비하였다.

당·군·공안기관들의 경우 비교적 상세한 지질자료를 가지고 국가적 지질조사기관들을 동원하여 광산개발대상을 선정한다. 당·군·공안기관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적으로 이미 탐사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유한데 기초하여 광산을 개발한다. 다음 지질탐사기관을 동원하여 일정하게 탐사를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광산개발대상을 선정한다. 그러나 지방 군·공안기관들의 경우 역시 지역주민들과 오랜 지질자료에 의거하여 광산개발대상을 선정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 수요가 높고 돈 몫이 큰 광산개발대상지는 무역회사들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한다. 가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수출품이 많지 못한 북한에서 광산업은 무역회사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유망한 외화벌이 원천으로써 무역회사들이 한번 마음먹고 개발해 볼 만한 대상인 것이다. 일단, 광산개발대상이 나르면 무역회사는 간부 회의에서 토의 후 지질 및 광물학자들을 대동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광산개발대상으로 적합성을 검토한다.

광산개발대상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종, 매장량, 지리적 조건이며 기

타 전기·물·도로조건 등을 따져 본다. 현지답사에서는 광물시료를 채집하여 분석해 보는 것을 잊지 않는다. 현지답사 시 지역의 지방 당조직과 행정조직들에 앞으로 무역회사가 관련 지역에 광산을 개발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한다. 협조 요청하는 내용들은 노력·전기·물·도로 및 광산건설·건물관리 등 광산개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중 지방 당 및 행정기관이 도울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동의를 받는다.

지방 당조직과 행정조직들은 관할지역에 외화벌이 광산이 설립되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무역회사의 협조에 적극 호응한다. 지방 당 및 행정기관들은 평소 당국에서 하달하는 비료·농업용 비닐박막·어린이 선물생산용 천·설탕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무역회사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다.

동시에 담배·술·결혼식 물자 등 간부들 사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타산 하에 무역회사의 협조 요청에 기꺼이 수락한다. 때로는 지방 간부들이 무역회사와 접촉과정에 자녀들의 대학입학과 사회배치 등에 대한 도움도 요청하고 무역회사는 그러한 지방 간부들의 요청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 서로 긴밀한 유대를 형성한다. 실제로 무역회사는 광산운영 중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관련 간부들이 선호하는 고급담배와 술 기타 외국상품을 준비해 가지고 사무실이나 집으로 찾아가 방조를 요청한다.

생산하려는 광물이 석탄인 경우 무역회사가 탄광을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므로 폐광이나 기존 탄광들에 투자를 해주고 석탄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역회사는 탄광에 필요한 설비·자재·식량·안전모 등을 납입해 주고 그 대금을 석탄으로 받는 방식으로 탄광 측과 합의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탄광들에서도 외화(미 달러)를 요구함으로써 무역회사들은 법의 눈을 피해 돈으로 석탄 값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탄광 측은 원래 국영탄광이나 당국이 미처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무역회사들과의 ‘합의’와 거래과정을 거쳐 자체로 해결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와 거래는 역시 ‘Win-Win’ 하는 부분이 있어 탄광 측과 무역회사는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고 행한다.

당·군·공안기관들과 일반 무역회사들은 매장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가장 힘 있는 단위³⁾들은 아예 광산개발지를 최고지도자의 ‘방침’을 받아 확보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방침’은 최고인민회의가 발표하는 법 위에 있는 것으로 다른 그 무엇 보다 우선시 된다. 무역회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도유명한 광물매장지가 나르면 최고지도자에게 ‘제의서’⁴⁾를 올려 ‘방침’⁵⁾으로 매장지를 선점한다.

제의서에는 “광산개발이 최고지도자의 연제, 어떤 내용의 과업을 관철하는데서

3) 북한에서는 당국의 권력을 이용하여 기관의 이익을 챙기는 단위를 ‘힘있는 단위’라고 하는데 가장 힘 있는 단위는 최고지도자에게 ‘제의서’ 올려 허가를 받는 단위이다. 그러한 단위들은

4)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게 각 기관들에서 올리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어떤 문제를 허가 또는 비준해 줄 데 대한 서류를 말한다.

5) 제의서를 올려 최고지도자의 사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다음 “그 과업관철을 위해 어느 지역에 어느 만한 규모의 광산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비준 받는다. 최고지도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사인과 날자를 기재하여 내려 보내주면 관련 기관은 그것을 “0000년 0월 00일 방침”으로 등록하고 그 집행에 돌입한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의서를 올려 방침을 받는 것은 당·군·공안기관 등 힘 있는 단위 일수록 수월하다.

광산개발과 투자유치에서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자료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탐사자료는 무역회사들로 하여금 자금을 절약하고 정확한 광물매장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여주는 것으로 광산개발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지역별 탐사대가 설립되어 활동하였으나 당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197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지질탐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질탐사자료들이 빈약한 상황이다. 각 지방 지질탐사대가 보유하고 있는 지질탐사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외화벌이 광산개발용이 아니고 국가의 지질탐사계획에 따르는 지질탐사자료이다. 따라서 무역회사들의 외화벌이 광산개발에 크게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지질탐사대가 보유한 지질탐사자료는 매우 귀중한 광산개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탐사대들은 무역회사들의 광산개발열의를 역으로 이용하여 위조한 지질탐사자료를 내놓기도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일제식민지 시기 일본이 탐사한 오랜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탐사자료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무역회사들은 그 지질탐사자료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기도 한다.

중국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북한 무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질탐사자료가 매우 귀중하데 비해 탐사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 광산개발을 위한 대외활동을 더 추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일부 무역회사들은 광산개발 예정지 중 몇 군데를 탐사한 후 가상적 지질탐사자료를 만들어 중국 측에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다.

광산개발을 위한 업무분담 및 추진을 분석해 보면 무역회사는 현지답사 결과를 놓고 무역회사 간부회의에서 광산개발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따라 광산개발에 필요한 업무분담을 진행한다. 무역회사 간부회의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설비·자재·운수·인력 등 문제들을 토의결정 한다. 또한 각 부서들에 설비·자재·운수문제들을 분담하고 광산담당부서(과·처)를 정하며 담당자를 선정한다. 한편, 광산개발에 필요한 설비·자재·운수수단을 해결하기 위한 대외활동 분담안을 발표하고 각 부서에 대외활동과업을 하달한다.

당·군·공안기관들의 광산개발을 위한 업무분담은 일반 무역회사들의 그것과 스케일이 다르다. 당기관이 광산을 개발할 때는 도·시·군 당 조직지도부와 5호 관리부⁶⁾, 행정부 등에 중앙 당조직으로부터 통지가 내려가고 인원선발과 설비투입 등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된다.

군부가 광산을 개발할 때 가장 눈에 띄우는 것은 군인들이 먼저 광산개발대상지

6) 5호관리부는 순수 금생산을 목적으로 당조직과 중요 기관들에 거의 다 존재하는 전일적 체계를 갖춘 외화벌이 시스템이다.

에 투입되는 것이다. 군인들의 투입에 이어서 설비들이 투입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광산개발을 다그치는 것이다. 군은 인력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는 바, 군인들을 대량 투입하여 설비부족으로 채굴과 채광에서 아쉬운 부분을 ‘인해전술’로 메우고 있다.

광산개발지 관련 전망이 좋은 대상들은 대체로 군부대 위수구역⁷⁾에 있는 바, 일반무역회사들이 이 지역을 광산으로 개발하려면 주둔부대와 ‘홍정’을 한다. 즉, 일반무역회사는 위수구역에서의 광산개발을 허용해 줄 것을 부대에 요청하고 부대는 생산된 광물을 수출하여 번 돈의 일부를 합의된 금액대로 정해진 기일에 부대에 입금하도록 상호 합의를 한다. 이 경우도 부대는 위수구역에서의 광산작업에 대한 ‘허가’를 총참모부로부터 받을 것을 일반무역회사에 요구한다.

일단 주둔부대와 광산개발을 ‘합의’ 한 일반무역회사는 인맥을 동원하여 총 참모부 관계부서에 위수구역에서의 광산개발문제를 제기하고 허가를 받는다. 군부대와 군 총참모부와의 교섭과정에는 막대한 로비가 동반되는 바, 무역회사가 번 외화의 얼마를 군부대나 군 총참모부에 입금한다는 내용 외 인맥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로비물자가 들어간다. 군부대는 일반무역회사가 회사재정상황으로 제때에 부대와 약속한 대금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무역회사 성원들과 노동자들의 위수구역출입을 차단하기도 한다.

공안기관들은 공안기관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광산기술자·설비 등을 비교적 실속 있게 동원하여 투입하며 소문을 가급적 내지 않으면서 광산개발을 추진한다. 일부 공안기관들은 무역회사의 ‘비리’를 들춰내는 과정에 광산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관련 무역회사와 모종의 ‘딜’을 하면서 공동운영하거나 아예 접수해 버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광산개발의 일반적 패턴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일부 경우는 지방 행정 및 당기관이 관할지역 내 광산매장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중앙의 무역회사에 찾아와 함께 광산을 개발하자고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방당국은 광산매장지와 인력·전기·물 등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무역회사는 설비·자재·자금을 투자하고 광물판매 등 대외활동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동개발한다. 무역회사와 지방 기관들이 ‘합작’하는 이러한 방식 역시 장단점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광산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활동은 다음과 같은바, 북한에서 광산개발은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자금과 설비부족을 겪은 이후 거의 모두가 중국기업 및 무역회사들의 투자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규모에서의 광산개발대상이 아닌 경우 최근 개발되는 외화벌이 광산들은 대체로 중국 측의 투자를 의거하여 개발되고 있다.

중국 회사들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북한 무역회사들은 대외활동을 진행하는바, 주로 중국 측과의 면담과 현지답사,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진행된다.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활동의 초기단계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중국무역회사들에 팩스로 메시지를 발송

7) 군부대의 경비 및 주둔지역으로 일반 주민들이 드나들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한다. 메시지는 “우리 회사가 XX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귀사와 공동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바, 귀가의 흥미여부를 알고 싶다.”는 식으로 작성한다.

2004년 북한에서 몰리브덴이 수출되고 중국 시장에서 몰리브덴 가격이 지속 상승 할 때에는 북한 측에서 “어디에 몰리브덴 매장지가 있다.”고만 하면 중국 회사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으며 ‘투자’를 약속하였다. 홍보용 메시지에는 광종, 광물의 품위, 도로 및 전기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중국 측의 흥미를 유도한다.

또는 광물공급을 요청하는 중국무역회사들에 위와 유사한 방식의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보내 상대의 의향을 타진한다. 팩스 또는 면담을 통해 중국무역회사가 광물거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식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준비를 한 후 다시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은 국경(신의주, 혜산 등)면담과 도강대표단⁸⁾의 중국 국경지역 출장시 진행한다.

일부 경우 중국 무역회사가 오랜 거래과정을 통해 파악 있는 북한 무역회사에 광산에 투자할 의향을 비치면서 광산개발대상이 있는지를 먼저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다. 면담에서는 먼저 중국 측에 “어느 지역에 어떤 광종의 광물매장지가 있다.”는 데 대해 설명하는데 이때 투자할 대상의 지질도·지형도·광물시료 등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중국 측의 투자를 독려한다.

다음은 중국 측을 초청하여 투자를 위한 현지답사를 진행하는데 현지답사가 만족하면 쌍방은 투자 내용과 규모, 상환방식 등을 토의한다. 북·중 무역회사들이 다년간 무역과정을 통하여 돈독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는 광물매장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북한무역회사가 면담과정에서 한 설명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면담을 통하여 토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쌍방합의에 도달하면 쌍방은 투자계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한다. 투자계약에 따라 중국 측에서는 설비·공구들을 납입하고 북한 측은 국경에서 설비·공구 등을 인계 받아 광산현지로 수송하여 설치한다. 초기 중국 측의 광산투자는 순수 생산설비·자재에만 제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전모·작업복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무역회사들은 생산과 수출과정에 발생하는 설비·자재·운수수단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국 측과의 면담을 통해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식량공급용은 물론 당국으로부터 하달되는 식량구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회사는 식량 선납입도 중국 측에 요청한다. 북한 측의 이러한 식량 선납입 요청에 따르는 중국 측 ‘선투자’도 종종 발생하는데 북한 측 무역회사는 선납 받은 식량대금을 후에 광물수출대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북한 측 무역회사가 먼저 요청하여 식량 등 선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중국 측은 북한의 급한 사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선납입하는 상품에 가격을 덧붙여 납입하고 광물대금에서 제하면서 이득을 챙긴다.

8) 무역회사의 업무적 성격을 지니고 북·중 국경 중국 측 지역으로 드나드는 북한무역회사대표단을 말한다.

광산운영에서 북·중 양측은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며 북한이 요구하는 생산용 설비·물자들은 중국 측에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중국 측은 북한 무역회사의 요구를 쉽게 접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측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시스템과 결합된 양상을 띠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당·군·공안기관들은 광산개발을 위해 회사 자체자금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당·군·공안기관 등 재정상황이 양호한 회사들은 중국 무역회사들이 투자 시 투자금액을 부풀려 투자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가급적 자체자금으로 광산을 개발한다.

당·군·공안기관들이 중국 무역회사들에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 중국 무역회사들은 당·군·공안기관들의 북한 내 ‘파워’를 감안하여 과감하게 투자한다. 중국 무역회사들은 북한 측 무역회사가 당·군·공안기관 소속이면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나선다. 이러한 ‘자신감’은 투자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광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

3. 북한 대외무역 및 외화벌이 전망

현재 북한은 관광객 유치와 해외파견근로자들의 해외체류 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관광업발전을 위해 해외공관들에 주재국과 주변 나라, 세계 각국의 관광동향, 관광상품, 관광추세를 조사하여 보고할 때 대한 지시들을 하달하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근로자의 추가파견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주재국에 더 체류시켜 돈을 벌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2017년) 6월 평양에서 해외파견 대사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서 해외근로자들의 연장체류문제가 심각하게 토의되었으며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최근 유엔안보리결의 제2271호와 제2375호가 채택 발효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들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주요 수출품들의 수출이 금지되어 그 출로를 밀수출에서 찾을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밀수출거래 비용증가로 외화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 이어 한·미·일 대북독자제재가 시행되고 그 파급효과로 외화벌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대북독자제재가 시행되고 그 파급효과로 외화벌이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북한과 국경 한 중국이 2016년 2월 40여개 금수품목을 발표한데 이어 그해 4월 25개 금수품목 추가로 발표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중 국경에서 밀수단속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화하고 있어 북한은 수출과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외화벌이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출로모색을 강요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따라서 북-중 무역이 보다 긴박감 있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덜 미치는 관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성과 고강도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제재 하에서 북한은

각이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광의 문턱을 보다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한 관광비자발급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현 관광여건에 맞는 관광상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백두산 무두봉지구, 온성관광지구 등을 완성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파견근로자들의 현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준을 낮추고 파견대상을 적극 개발하여 현존 근로자들을 체류를 지속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중앙당과 내각의 파견담당 실무부서들의 조율 하에 현재 파견되어 나가 있는 인원들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외 대사관들과 주재원들에게 현재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지속적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현지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들을 하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견업종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